

## 징병제 반대 관련 자료 모음

### 1.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2001/03/17

- 1) 군대폭력과 군의문사(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 2) 여성·장애우와 징병제-군복무 가산점을 중심으로(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 3)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 나도 군대에 보내달라-군복무 가산점을 중심으로(최정민, 평화인권연대)
- 4)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 병역특례지도 관련 초벌 보고서(손상열, 평화인권연대)
- 5) 한국징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김창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6) 한국의 병역, 군사제도 변혁에 희망이 있다! 군의 자주화와 민주화의 긴 여정을 중심으로(김삼석, 군사문제연구가)

### 2.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 자료

- 1) 징병제 폐지론
- 2) 비교우위론: 남녀공동 징병제, 징병제 VS 모병제
- 3) 외국병역제도: 미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스위스
- 4) 군축문제에 대한 주제토론: 유럽제국의 병역제도 전환 추세
- 5) 징병제 관련 보도 기사 자료: 한겨레21, UNEWS

### 3. 병역기피사이트 관련 보도 기사 자료



#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 때 : 2001년 3월 17일(토) 오후 2:00 - 18일(일) 오후 5:00
- 곳 : 파주 흥원 연수원
- 준비하는 이들 : 이김현숙, 정경란, 전은주(평화를만드는여성회), 김창수(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용환(변호사), 이해숙(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카린 리(미국친우봉사회),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최정민(평화인권연대), 이대훈(영국브래드포드대학평화학)

## ■ 워크숍 전체 일정

### <17일(토)>

#### Session I

- 기조발제 (pm 2:30~2:50)  
<현행 징병제와 군복무, 무엇이 문제인가?> : 김창수(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패널토의(pm 2:50~3:50) : 대만, 콜롬비아 / 순차통역(각 15분씩)  
: Chien Hsi-Chien (Peace Time Foundation in Taiwan 총무)  
: Ricardo Pinzon (Colombia) 라틴 아메리카의 양심적 징집거부운동
- 질의응답 및 토론 (pm 4:00~5:00)
- 영역별 발제 및 질의응답 (pm 5:20~6:30)
  - ① 징병제 실태와 병무비리 : 김종대
  - ② 군대폭력과 군의문사 : 이혜숙(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 Session II

- 영역별 발제 및 질의응답 (pm 7:30~9:00)
  - ③ 병역미필 피해자-여성과 장애인, 군대내 성폭력 :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 ④ 양심적 병역거부, 징집제에 의한 피해실태 : 최정민(평화인권연대)
- 작은 잔치 (pm 9:00~11:00)

### <18일(일)>

#### Session III

- 국내외 경험나누기 및 UN관련법 (am 9:00~12:00)  
<국내외 양심적 징집거부 사례 및 한국에서 가능한 대안탐색>
  - ① 국내 : 김삼석 / 국외 : Chien Hsi-Chien, Ricardo Pinzon
  - ② UN관련법 : 이대훈(브레드포드대학 평화학)

#### Session IV

- 대안 및 전략 토론 (pm 1:30~4:00)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 사회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 일시: 2001년 3월 17(토)~18일(일)
- 장소: 파주 홍원수련원

###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The Association of the Victims' Families by the Military Violence

02-794-1978, 011-9775-8080, 033-732-3050

<http://www.okhome.co.kr/home/deskpro>

E-Mail : [deskpro@netsgo.com](mailto:deskpro@netsgo.com)



장병계의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2001년 3월 17-18일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The Association of the Victims' Families by the Military Violence

▷ II분과 · 17일(17:20~18:30)

## 군대폭력과 군의문사

李惠淑(國家有功者 故 國軍 朴賢雨 母/全國軍暴力犧牲者遺家族協會 會長)

### 1. 머리말

'全國軍暴力犧牲者遺家族協會(略稱 全軍協)'는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들의 모임으로서, 軍服務 중 '本人 重過失에 의해 感電死'했다는 이들의 死因에 의문을 제기, 명백한 '他殺'을 '自殺'로 造作하는 軍當局에 맞서 建軍 50년 만에 最初로 軍疑問死 真相糾明을 이루어낸 '故' 朴賢雨 母 李惠淑을 主軸으로 1998년 12월 7일(月) 設立되었습니다.

國家有功者 '故' 朴賢雨는 1998년 7월 20일(月) 08:20경 상관계 업무 보고시 同期兵들을 대표하여 군대내 비민주적 폭력행위를 보고하고, 16:00경 상관의 지시로 '진술서'(참조: 별지 1)를 작성하여 제출한지 불과 두 시간여 만인 18:10경 또다른 상습구타자인 古參兵士에게 감전사를 위장한 방법으로 살해당한 후, 19:31 '철원길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당국은 '故' 一兵 朴賢雨의 사인을 '자살'로 조작하기 위해 사건 현장부터 훼손하고 고인의 사체를 국군일동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한 후 비로소 21:05경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였으며, 23:55경 국군일동병원 영안실에 당도한 유족에 대하여 고압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순직처리 회유 및 강제부검 협박과 비디오 촬영 불허 등 유족의 진실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일병 朴賢雨의 '군폭력 피해 보고'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였습니다.

'故' 一兵 朴賢雨 遺家族이 군당국의 조직적인 隱蔽·縮小·造作·歪曲·懷柔·脅迫에 맞서 一戰을 不辭하고 死因 糾明에 나선 결과, 사고 발생 3일 후인 1998년 7월 23일(木) 17:50경 5부 합동조사로 사고현장인 6사단 청성식당 지하보일러실에서 열린 제3차 현장검증 당시 '故' 일병 朴賢雨 母 李惠淑은 공개적으로 殺害犯 金允京 상병 自白을 錄取하여 他殺의 증거로 확보한 후 '故' 上兵(追殺) 朴賢雨 靈前에 謝罪하도록 조치하였으며, 1998년 11월 9일(月) 軍事法院에 대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원인은 폭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살 사고로 처리했던 잘못을 저질렀다.'는 國防部長官 千容宅의 증언(참조: 별지 2), 1998년 11월 10일(火) 陸軍第3野戰軍司令官에 대한 국회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구타사고가 수사상의 착오로 인하여 단순 自殺事故로 확인되는 오류가 발생'되었다는 第3野戰軍司令官 吉亨寶 大將



증언(참조: 별지 3), 1998년 11월 11일(水) 國防部·合同參謀本部에 대한 국회국방위 국정감사 당시 '6사단 사고처럼 구타에 의한 사망이, 자살로 조작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國防部長官 千容宅의 증언(참조: 별지 4)을 확보함으로써, 진급 불이익을 우려한 지휘관들의 은폐·축소·조작·왜곡 행위 및 초동수사시 군수사관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수사상의 착오로 인해 단순자살로 종결지어진 모든 군의문사에 대하여 진상규명 및 정당한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故' 國軍 朴賢雨 유족은 國家有功者 '故' 國軍 朴賢雨의 의로운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 그동안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한 군폭력 희생자들의 사인을 민간 차원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하고 '故' 國軍 朴賢雨의 유지를 받들어 군폭력 근절에 앞장서 더 이상 군에서 억울하게 생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 가슴을 멍들게 하는 반인간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반국가적 범죄를 근절하는데 남은 생애를 다 바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전군협 회원 중 군의문사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 해서 이미 고인이 된 아들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명에 회복'을 이룰 수는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고인이 되어 자신에게 씌어진 '자살'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어버이로서의 애끓는 애절한 사랑 표현인 동시에 도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을 군폭력에 희생당한 유족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뻗속 깊이까지 절절히 느끼기에 이러한 가정파괴를 막기 위해 생업을 전폐하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및 군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희 협회는 군복무 중 당한 부당한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피해사실을 신고 받아 군당국에 협조를 구하여 보직 변경 등으로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군폭력 피해사례를 수집한 후 그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관계당국의 주의를 환기시켜 군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군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 앞 집회를 개최하고, 군내 사망사고 조사 활동으로 군의문사 진실 규명 및 군의 의식 전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회원 자격은 군폭력 희생자 및 피해자 가족, 군폭력을 근절시킬 사명감을 갖추고 본 협회의 회칙 준수를 약속하는 자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라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1. 3. 17.

全國軍暴力犧牲者遺家族協會  
國家有功者 故 國軍 朴賢雨 母 會長 李惠淑



## 2. 군대폭력

### ■ 군대내 폭행건수

- 국방부 자료 : '98년 2,068건, 99년 9월까지 1,440건
- 육군 : '91년 478건, '92년 387건, '93년 568건, '94년 720건, '95년 993건, 2000년 605건
- \* '91년에서 '95년까지 5년동안 3,146건의 구타행위(년평균 629건)

부대내에서 구타·가혹행위가 있어 사고가 났더라도 부대 지휘관이 승진 보직 등에 영향을 받을까봐 이것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자 은폐·축소·조작·왜곡을 시도하고 그래서 실제는 위의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반에서 은폐된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폭력·상해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 ■ 군폭력 인권피해 유형

-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군기 확립을 내세워 구타
- 계급 때문에 인격을 모독하고 이유 없이 구타
- 학력, 가정환경에 대한 자괴지심으로 구타
- 지역감정으로 인격을 모독하며 구타 및 가혹행위
- 휴가 복귀시 무엇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구타
- 하는 일마다 꼬투리를 잡아 갈구는 행위
-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
- 고문관 취급을 하며 집단적인 따돌림
- 탈영 및 자살을 부추기며 구타·가혹행위
- 성폭력 및 성추행

### ■ 군폭력 피해 사례

○ 1997년 2월 8일에 육군 청성부대 조익성 상병이 휴가를 나왔다가 고참들 때문에 도대체 군생활이 너무나 괴롭다고 하면서 고참들 원수를 좀 갚아달라는 요지의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사건

○ 1998년 7월 20일 육군 청성부대 박현우 일병이 08:20경 상관께 업무 보고시 동기병들을 대표하여 군대내 비민주적 폭력행위를 보고하고 16:00경 상관 지시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지 불과 두 시간여 만에 또다른 상습구타자인 고참병사에게 감전사를 위장한 방법으로 살해당한 후 자살로 조작되었다가 유족의 노력으로 타살임을 진상규명한 사건

○ 육군 5사단 36연대 6중대 근무 중 중대장 정모 대위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함모 일병과 이모 이병에게 강제로 라면 9개를 먹이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15회 실시해서 이를 견디다 못한 이모 이병이 '99년 1월 28일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한 사건

○ 군폭력을 근절시키려면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자 및 관계자에 대하여 계급과 직책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하며, 구타사고 다발 부대 지휘관에 대하여는 진급시 불이익을 주어 구타·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내무관은 일제시대 개념으로 수용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공간이고 자기 문화의 공간이고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휘체계상의 기합을 받거나 하극상을 하거나 그런 나쁜 요소로 구성된 수용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50여 년 동안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때문에 결국 의문사가 생기고 군기사고가 생기고 또한 하극상이 생기고 내무반 생활에서 많은 갈등구조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반생활 개선 등 명랑한 병영생활 여건을 마련하여 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여 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군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자살을 왜 했는지 그 원인행위가 어느 정도 밝혀져도 유족이 장례를 지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살원인 제공자를 영창에 잠시 보내는 식으로 적당히 처리해 버리지 그 원인 제공자가 중벌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폭행·가혹행위·인격모독·성추행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살원인 제공자는 엄중 처벌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 사병들이 일방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에서라기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안보가 대한민국의 평화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내는데 얼마나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지휘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군대내 성범죄 현황

군인들의 성 관련 사건 보고에 따르면 현역 장병의 성범죄 건수는 1998년부터 2001년 현재 까지 강간 244건, 동성간의 성추행 등 133건을 포함해 모두 666건으로 집계돼 군내 성폭력과 성추행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군내 동성간의 성추행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병자 및 자살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실정으므로 성범죄 발생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여 성범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 ▣ 성폭력-성희롱 피해 형태

- 성행위 흉내내기 30.2%
- 신체 애무 15.9%
- 성경험담 발표 14.5%
- 동침행위 12.7%
- 자위행위 9.5%
- 성기 애무 3.2%
- 오럴섹스 1.6% 등



#### ▣ 군폭력 근절 대책 마련 시급

○ 자식을 군에 사병으로 보낸 부모들은 한시라도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혹시나 상급자에게 매를 맞거나 시달리고 있거나 앓나 하면서 늘상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안전하게 복무하고 兵役의 義務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군에 갔던 자식이 무사히 돌아와서 군 입영 전보다 더욱 성숙한 젊은이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환경이 자리 잡힌다면 병역기피는 사라질 것입니다.

○ 군기 확립을 목적으로 기합 줄 경우 가정과 교육현장 등 체벌이 금지된 환경에서 성장해 자존심과 자의식이 투철한 젊은이들이 군에 와서 얼차려 받고 상관으로부터 구타와 모욕적인 언사를 받을 때 감당할 심리적인 태세가 안 되어 있음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군대내 폭행은 곧바로 군 기강을 저해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이 확대될 경우 각종 의문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군폭력 구제수단으로 소원수리 등의 제도가 있으나, 소원에다 자기의 여러 가지 군생활에 대해 솔직히 써내면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 필체까지 검사하여 오히려 더 엄한 기합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여 왕따시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소원수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군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인 신분을 노출시켜 신고인인 피해자로 인해 헌병 및 검찰 조사 등 부대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집단따돌림으로 군생활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 군내 구타와 안전사고가 사라진 병영문화가 필요합니다. 폭력이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영, 총기난동, 자살 등 제2의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결국 將兵의 士氣를 저하시켜 군의 전투력까지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휘관들이 구타 가혹행위는 근절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 폭력·상해사건이 발생할 때는 은폐된다든지 용서되지 않고 철저히 조사되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군내 구타사고 예방의 관건은 각급 지휘관, 특히 대대급 이하 지휘관의 지휘 통솔과 부대 관리 능력,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달려 있느니 만큼 각급 부대 지휘관이 감찰검열과 소원수리 제도, 사고신고 전화 등을 지혜롭게 운영하여 구타·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성희롱 피해 발생장소

- 내무반 66.7%
- 근무초소 12.7%
- 목욕탕 보일러실 화장실 4.8%
- 훈련시 막사내 3.2% 등

▣ 군대내 정신병 발생건수

- 국방부 자료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까지 2년반 동안 전군에서 장병들의 정신병 (간질·우울증·정신분열증 등) 발생건수는 모두 8283건(외래환자 8283명, 입원환자 3986명, 의병전역자 1344명)

탈영사고 현황

▣ 연도별 탈영인원

- 국방부 자료 : 1992년 1560명, 1993년 1692명, 1994년 1776명, 1995년 2283명, 1996년 1949명, 1997년 2023명, 1998년 1986명, 1999년 1462명, 2000년 8월 현재 815명

- 탈영사고는 주로 군 복무 1년 미만의 초년병에 의해 선임병의 가혹행위, 군 생활 부적응 및 여자와 가정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매일 다섯 명 정도가 탈영하여 범죄인이 된다고 합니다. 탈영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초년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병영상담실을 운영하여 병영내 악습척결 및 군복무간 애로사항 타개, 인내심 함양을 위한 철저한 훈련과 정신 교육, 엄정한 군기 확립과 병행하여 내무반생활 개선 등 명량한 병영생활 여건 마련에 지휘관심을 경주하여 탈영으로 인한 제2·제3의 범행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다른 군폭력 피해

▣ 군에서 종교상 이유로 인한 항명죄로 전과자가 되는 사병의 숫자가 일년동안 약 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개년간 육군에서 종교상 이유에 의한 항명죄 사건수는 1996년 344건, 1997년 447건, 1998년 513건, 1999년 562건, 2000년 261건으로 이중에 평균 3~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소가 되었으며, 또 평균 2~3건을 제외하고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 종교상 이유에 의한 항명사범은 '여호와의 증인'교 등의 신자들로서, 이들은 군에 입대한 후 신병훈련소에서 자신들이 믿는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휘관의 집총명령 및 군사교육 명령을 거부하여 군형법 제44조 소정의 항명죄로 입건 처벌되고 있으며, 대상관 범죄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처벌은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으나, 종교상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 군법무관들에게 가장 쉬운 사건은 바로 이 종교상 이유에 의한 항명죄 사건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아니하며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도 전혀 항소하지 아니하는 아주 순조로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 부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거의 일률적으로 법정최고형을 선고하고 있다는데 군 복무기간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왜 하필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굳이 선고해야만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 종교적인 이유에 의한 징총거부로 인한 항명죄 사범은 강도나 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국방의 의무와 종교의 자유가 상충하는 부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은 조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종교상의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징총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우리 군이 종교를 지키려는 젊은이들을 3년간 감옥에서 지내게 하고 평생 전과자의 낙인을 찍는 오류를 더 이상 범하도록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 독일의 경우 헌법상 양심상의 이유로 징총을 거부했을 경우 징총거부권(제4조제3항)이 법적으로 인정돼 있고 병역의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대안적 해결방법'으로 군무원으로 종사하게 한다든지 다른 형태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도 또한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민간역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위가 아랍국가로 둘러싸인 이스라엘도 종교적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우도 매년 500명씩 '여호와의 증인' 등이 징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관행적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역무를 개발해야 합니다.

▣ 물론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녀들의 병역기피 등이 문제가 되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진정한 종교적 이유로 인한 징총거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겠지만 장기간(현역병 의무복무기간의 1.5~2배)에 걸쳐 군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지체부자유자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록도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대체역무를 개발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3. 군의문사

#### ▣ 현역 군인 사망현황

구 분	1980년대	1990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6까지
사망인원	연 692명	430명	522명	383명	408명	273명	248명	218명	87명
자살인원	?	?	?	100명	103명	92명	102명	98명	42명

\* '94년 이전 자살사고 연평균 250여명, '95년 이후 자살사고 연평균 100여명

\* 1997년~2000년 6월까지 현역 군인 사망인원 826명중 자살은 약 40%에 해당되는 334명



○ 군당국이 자살로 결론지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에서 제시하는 자살원인은 부대관계가 30%, 개인관계가 70%로 部隊關係는 통제된 병영생활에 대한 부적응·복무염증·처벌우려·구타 등이고 個人關係는 가정환경비관·여자관계·신병비관 등입니다.

○ 매년 우리 국군이 적과 교전해서 200여명이 사망한다 해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지휘관들이 문책 당하고 군작전에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시도 아닌 때에 자살이든 타살이든 사고사든 군에 가서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군복무자의 안전은 군이 책임져야 함에도 말입니다.

○ 군에 자녀를 入營시키고 부모 입장에서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이 군대 건강하게 잘 마치고 제대해서 환한 얼굴로 집에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는 자기 자식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사고로 인해 몸을 다치지는 않았는지, 또 수많은 자살이라든지, 타살이라든지, 구타를 당해 죽는다든지, 또 사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의문사, 이런 것들이 부모들의 걱정을 더하게 합니다.

○ '국민의 군대'라면 군을 믿고 자식을 맡긴 부모들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군에서 확고히 생명에 대한 안전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꽃다운 나이에 군에 보냈더니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을 때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 모병제도 아닌 징집제 하에서 다 장성한 아들, 특히 요즘에는 자녀가 들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국방의 의무에 보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자살'했다고 하면 기함을 토할 일입니다.

○ 남들 다 하는 군생활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약하게 자살했다는 데 대한 자괴감, 부모를 배신했다는 절망감, 자살에 대한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인한 이웃의 눈길에 대한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절망상태에 빠져들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들의 죽음에 대해 너무도 많은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미 수사는 '자살'로 종결지어졌고, 부실한 초동수사 덕분에 자살이 아님을 입증할 길은 묘연합니다. 이래서 의문사로 남은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자살이든 타살이든 사고사든 군대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군에서 책임지는 체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 현행 사망사고 발생시 군 수사의 문제점

- 사망사고 발생후 수사 착수 전 이미 자살 예단
- 사망동기 짜맞추기: 내성적 성격에 의한 군복무 염증, 가정환경 비관, 여자문제 비관 등
- 사건현장 훼손, 초동수사 엉망
- 유족이 모멸감을 느끼도록 무례하게 행동하고 군사기밀을 내세워 비협조 또는 협박
- 상급기관에 민원제기시 1차 수사기관으로 또다시 사건 이송

## 잘못된 군 수사 사례

- 1996년 10월 22일 강원 양구군 남면부근 산에서 짜리베기작업 도중 실종되어 '여자문제로 인한 탈영'으로 단순탈영처리되었던 육군 2사단 공병부대 소속 表宗郁 일병은 부대 인근에서 무장간첩 잔당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육군수첩에 '이제 일병을 달고 군생활에도 적응이 되었지만 원인 모를 한숨과 동경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 신세타령을 해야 하는지 내자신도 한심하다. 무한히 펼쳐진 자유...'라는 글을 남긴 채.
- 이 사망사고 역시, 군의 신뢰도를 매우 실추시킨 사건입니다.

## 군 수사 개선 방향

### ① 수사관들의 사망사고 처리교육 강화(지침, 규정 마련)

현재 경찰에서는 변사사건에 대하여 변사사건 처리요령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따라 경찰관들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경찰관의 경우 그 규정의 내용이 부족하므로 군사법경찰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 ② 초기 사고현장을 끊기지 않고 완전하게 담은 비디오 촬영 및 복사본 제공을 의무화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수사상황에 의문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휘관들에 대한 사건현장 보존의무를 부여하고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상황을 완전히 촬영하여 가족들의 의문점을 해소시키고 수사기관이 상황을 은폐 또는 조작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사기관에서 비디오 촬영을 한 경우에도 그 내용의 일부가 끊겨져 있거나 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유족에게 복사하여 제공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 ③ 경찰의 경우처럼 사망사고 전담반(감식반) 운용

현재 경찰에서는 사망사고의 경우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이를 전담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감식반을 두어 이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효율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군사법경찰관의 경우 이러한 전문인력 없이 일반 군사법경찰관이 업무를 맡고 있어 사인 규명에 필수적인 증거를 놓치기 다반사이며, 그로 인해 유족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군사법경찰관의 경우에도 군단이나 군사령부 정도의 부대에 이를 전문으로 하는 수사인력을 충원해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이를 전담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 ④ 수사결과 발표후 수사기록 공개

현재 사망사고의 수사가 끝나면 수사기록은 군검찰로 송치되는데, 유가족에게 수사기록을 복사해 주지 않아 유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이를 복사하여 제대로 수사가 된 것인지 전문가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유가족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 ⑤ 검찰관의 실질적 수사지휘 확립

군사법원법 제264조에 의하면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의 경우 검찰관이 필요적 검시를 하게 하고 검증여부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검찰관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보충적으로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사 현실을 보면 사망사고 발생 후 헌병이 수사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하는 등 검찰관의 수사지휘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병들은 직업군인들로서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할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권력을 남용해 사건 조사시 은폐·축소시키는 폐단을 없애려면 헌병대를 기무사처럼 국방부장관 직속기구로 독립시켜 군지휘관의 사건처리 개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진상규명의 길을 모색하여야 하며, 수사 초기부터 의무복무자인 검찰관에게 수사지휘를 실질적으로 하게 하면 조금 더 공정할 수 있으므로 가족들의 의혹을 줄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유족의 대처 방법

#### (1) 초기단계의 증거수집

- ①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만한 자료나 유품을 모두 챙길 것
- ② 사체 사진 촬영
- ③ 사고현장 사진 및 비디오 촬영
- ④ 부대원 및 군관계자 진술 반드시 녹취

#### (2) 부검시

- ① 전과정 비디오 및 사진 촬영
- ② 부검 직후 법의군 의관의 부검 소견 반드시 녹취
- ③ 유족측 참관인으로 법적·의학적 지식을 갖춘 법의학자나 변호사 입회

#### (3)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노력

### 군의문사 조사 기관 및 단체

#### ○ 국방부 특별조사단

1980년대 이후 군의문사 진상조사를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각 군을 통제하여 조사실명제로, 제기된 민원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진행하여 그 의혹을 전부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하였으나,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 특조단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사실상 군의문사 진상규명 불가능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약칭 유가협)  
민주화운동 관련 군의문사
- 인권실천시민연대(약칭 인권연대)
- 전국군포력희생자유가족협회(약칭 전군협)
- 천주교인권위원회

#### 군의문사 발생 배경

○ 군대내 사망사고 발생시 사망원인이 군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군 지휘관들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문책이 따르기 때문에 군 지휘관들이 사건처리에 개입해 사건원인에 대한 조사의 축소·은폐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자살에 대한 입증에 없을 시 의문사나 변사로 결론을 내려야 함에도 군이 복무염증 또는 가정환경을 비판해 자살했다는 등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이유를 만들어 자살로 처리하는 이유는 진급 불이익을 우려하는 일부 지휘관과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진급에 영향을 미치는 문책이 따르지 않는 자살로 처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되는 군부대내 사인재조사 진정서 가운데 기존 수사결과가 뒤집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전적으로 군에서 져야하는 명백한 이유

■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 육군·해병 26개월, 해군 28개월, 공군 30개월

○ 우리 대한의 아들들은 군복무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신검을 통과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했습니다.

○ 모병제가 아닌 징집제 하에서 부모들은 나라의 부름 받아 국방의무를 수행하러 입대하는 아들을 격려하며 우리 군을 믿고 부모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 군에 맡겼습니다.

○ 군은 폐쇄적인 공간이며, 지휘 계통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휘·관리·유지되는 조직입니다. 군내 사망사고는 군의 지휘·관리 체제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현상이므로 구성원 관리를 잘못된 데 대한 공공적인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군은 사고예방의 책무가 있습니다.

○ 꽃다운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자살' 또는 '본인 중과실에 의한 사고사'라 할지라도 군에 오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람이며 부모가 보호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군에 있는 것입니다.

#### 군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 전군 53년간 자살로 종결지어진 모든 군의문사가 수사상의 착오로 인해 단순自殺事故로 확인된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은 군의 수장으로서 군수사관의 능력부족으로 초동수사에서 자살로 종결지어진 군의문사와 진급 불이익을 우려한 지휘관의 은폐·축소·조작·왜곡 행위로 인해 자살로 종결지어진 군의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군의문사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 국방부장관은 '공명정대한 指揮權 행사와 信賞必罰 등으로 사기 높고 기강이 확립된 강한 군대를 육성함으로써 귀중한 인명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더 이상 군의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국방부 특조단의 재조사 문제점

○ 육본검찰관 '전면 재조사라는 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국방장관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이다. 수사기록만 보고 그냥 중요 참고인만 만나고 지고 조사기록 확인하고 이상 없는 것으로 끝내는 그게 전면 재수사예요 솔직히 말하면.....'

○ 전면재조사를 한다지만 과거에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똑같이 조사 하는데 어떻게 자살로 처리한 것을 타살이다, 자살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능력이 뛰어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해도 자기 조직에 불이익이 되는 그런 수사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군의문사 전면재조사는 국방부장관이 국민에게 스스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그 약속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 현행 사건의 경우 고의로 현장이 훼손된 상태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수사관의 임무이므로 십수 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바로 오늘 발생한 사건처럼 인식하고 수사기록상의 자료를 활용해 철저한 전면재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 은폐·축소·조작·왜곡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관의 능력이 부족하면 의문사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보존된 수사기록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의 안목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건의



실체규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현장 및 사고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 외에 수사관 판단으로 기재된 기록은 일체 무시하고 철저하게 전면 재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의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진상과 처벌결과도 공개하고, 과거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인과 유족에 대하여 정중히 예우하여야 합니다.

○ 의문사 전면재조사 과정에는 유가족과 유가족이 선임한 변호사, 자문위원 등의 수사기록 열람 및 현장 접근을 보장하고, 유가족이 제시한 각종 자료의 적극반영 및 필요시 군 이외의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국방부 특조단은 의문사 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유가족들이 제기하는 제반 의혹 해소를 위해 유가족의 수사기록 열람 및 현장 접근을 보장하고, 유가족이 제시하는 각종 자료의 적극 반영과 필요시 군 이외의 전문 감정기관을 활용하는 등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간 시일경과에 따른 사고현장의 변형, 일부 수사기록의 부재, 전역한 관련 참고인 소재 파악 곤란 등 법적·현실적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유가족의 고충이해와 국방개혁 차원에서 조사실명제 등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군협에 신고되는 사항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수사기록 열람을 불허하고 전역자들의 경우 소재파악이 안되었다거나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지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 4. 맺는 말

현행 체제(징집제)를 유지하는 경우

① 입대가능한 모든 인원을 입대시켜 군복무기간을 24개월 이하로 감축

② 신체적 특성에 맞는 병무를 판정하는 수단으로 신체검사

신체검사 등위 판정시, 모든 입영대상자를 소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합격·불합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은 소총수도 필요하고, 사무병, 이발병, 취사병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조직체이니 눈이 나쁘고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여도 누구나 군대 내에서 자신에게 맞는 병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군복무를 기피했거나 미필한 사람은 공직취업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 병역면제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평생동안 굴레와 가시방석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는 경우

무기체계의 첨단화 및 고도화에 부응하고 병력의 정예화로 군 전투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전제조건으로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경제적 부담능력 가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망님께

평생 일병 박현우입니다

제가 청성회관은 언제 나부터 모든 내용은 말씀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만 안좋은 것만 모든 것은 하였습니다. 일병 염문규가 한제현 병장한테

구두반도 차임, 차임은 꼭해서 심한 신나 나도 매 맞는 것은 모욕하였고,

하성년 일병 역시 차임으로 꼭해서 구하는 당하고, 그날 저녁 목욕탕에 드러가서

어느 누가 보든 이제 정만 사랑이 아니라 나 만 한 경 단 바람 있게 구하는 하는 것은

모욕 하였습니다. 그후 소망님께서 어쩔 조 회 시간 에 한 제 현 병 장 한테, 애 를 때 리 고

말 나 고 하 셨 을 때, 그 순 간 에는 네 안 겟 습 니 라 고 대 답 은 하 고, 사 랑 으로 널 어 고

또 다 시 그 순 간 으로 드러 간 뿐 아 무 런 변 화 가 없 었 습 니 라.

그리고, 제가 폐병으로 보 것이 바 뀌 어 서 관 리 신 이 양 아 있 을 면, 관 리 신 으로 타 서,

노 고 와 게 하 여 주 방 으로 데 리 고 와 서 주 방 이 까지 했 습 니 라. 그 뿐 만 아 니 라.

그냥 가 만 히 다 른 이 은 하 고 있 을 면, 타 서 주 방 으로 이 제, 판 등 그 리 고 칸 등 은

검 은 주 방 서 리 용 했 습 니 라. 그 리 고 김 윤 경 상 병 에게 는 모 든 구 하 리 의 욕 은 하 였 을 면

전 반 느 게 끝 났 다 고 다음 날 아 침 시 사 시 간 에 젓 가 방 은 런 러 위 고 뜻 이 개 했 고

김 윤 경 상 병 입 속 으로 드 러 갔 다 고 드 렸 습 니 라. 저 희 가 정 만 연 습 히 하 는 데 로

저 기 개 별 떠 나 행 동 하 여, 이 은 하 고 는 알 아 고, 소 망 님 은 나 망 이 나 보 나 고 하 고,

망 장 을 보 는 날 에는 구 하 리 의 말 은 하 였 습 니 라. 소 망 님 께 부 락 드 린 말 씀 이

있 습 니 라. 이 제 말 든 과 는 외 로 말 으로 구 생 한 이 편 해 진 만 큰 구 회 는

소 망 님 께 감 사 하 는 생 각 은 항 상 가 리 며, 연 습 히 생 한 하 겠 습 니 라.



시킬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기가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咸錫宰 委員님께서 6사단 청성회관 박현우 일병의 폭행에 의한 감전사와 21사단 방산회관 안성현 일병의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6사단 청성회관 박현우 일병은 상급자의 구타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고압볼트에 손이 닿아서 감전사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폭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살사고로 처리했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유족의 이의제기에 의해서 수사를 해서 폭행자를 군형법에 의해서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안성현 일병은 자기 조 병장이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질책과 함께 손바닥으로 어깨를 한번 정도 폭행한 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망의 간접적인 원인은 되겠지만 이러한 폭행을 당하고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방칼로 목 부위를 10회나 찌러서 후송도중에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경우는 폭행이 본인을 격분시킨 그러한 원인은 제공했지만 타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살처리하고 폭행자는 별도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趙舜衡 委員님께서 전도봉 사령관의 진급비리, 박현진 사령관의 공금횡령, 해병대 강모준장의 진급과 관련된 금품수수, 조양현 비리와 함께 민경천 중령의 비리, 김용기 중령의 비리를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비리들로 보았을 때 군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이 다 97년 이전에 95년, 96년 또는 93년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온 후에 이러한 비리사건은 현재까지는 발견된 것이 전무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軍의 戰鬥力은 士氣와 精神戰力에 직결되어 있고 정신전력과 사기의 원천은 공정한 인사에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지난 4월과 이번 진급 및 인사에 있어서 과거의 인사관행을 철저히 배격하고 지연과 학연을 떠나서 능력있는 사람이 발탁되는 공정한 인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금년도에 걸친 200명에 가까운 장군의 인사와 진급발표후에, 소령에서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전 계급의 진급발표후에 중진

과 같은 불미스러운 항의라든지 투서행위가 현재까지는 군에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군기강이 어느 때보다도 서 있고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으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趙舜衡 委員님과 趙贊衡 委員님께서 5·18 및 12·12事件關聯者 등에 대한 상훈치탈에 대해서 의뢰 주셨습니다.

5·18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상훈법 관련규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해서 5·18 및 12·12사건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상훈문제를 관계부처와 1차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李基文 委員님께서 法務官 試驗의 인기 하락으로 금년 13기 선발예정이나 법조인으로서 최소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면 충원확보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자질을 고려하지 않고 인원수만을 고려하는 현재의 人力管理 政策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방부는 우수한 장기 군법무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2년마다 40명 규모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96년에 선발한 법무 12기부터는 사법시험 인원의 대폭 증가로 사법시험 수준의 우수자들만 합격시켜 일부 충원확보가 미흡하였고 향후 인력전망을 재판단하여 시험시기, 충원인력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基文 委員님과 趙贊衡 委員님께서 法務官 任用法에 따른 판·검사에 준하는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시고 특히 趙委員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법무관 임용은 군법무관의 처우를 법관 및 검사에 준하여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와 일반 군보수체계와의 관계 등으로 군법무관 처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97년도에 軍人獎勵手當을 대폭 증액하는 국방부안을 확정된 바 있으나 IMF체제로 국가 예산형편이 어려워 이 시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基文 委員님께서 사단급에 檢察搜查官이 한 명이 있으나 행정보급을 같이 담당하고 있는 등 수사의 질을 저하시키고 수사에 열의가 없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개선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수감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 委員長 韓英洙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답변은 非公開會議에서 답변할 부분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모자라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실 문제는 대개 상식적으로 아는 문제니까 서면으로 만들어서 國防委員會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를 非公開로 하겠습니다.

<13시36분 비공개감사계속>

<13시52분 비공개감사종료>

○ 委員長 韓英洙 감사를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陸軍第3野戰軍司令官 吉亨寶 답변드리겠습니다.

朴世煥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장병들의 主敵觀 確立對策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병들의 精神戰力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사회적 현상을 우려하시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국가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장병들에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敵'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북괴의 변함없는 赤化野慾과 실상인식, 북괴 군의 취약점과 아군의 강점 비교를 통해 상대적 우월성을 확신시키고 강인한 교육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필승의 신념과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북괴가 對南赤化戰略을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명백한 우리의 '主敵'임을 인식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강병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朴世煥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軍宿所 團地化 및 福祉施設 추진실적과 지원해 주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張永達 委員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군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職業軍人들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군은 85.8%의 숙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13평 이하 협소 아파트 및 관사가 14.2%,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및 관사가 34.5%, 獨身宿所 22.4%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老朽宿所 交替와 부족숙소 건립을 위해서는 5년간 연평균 1,214억원이 소요되나 매년 할당되는 예산은 12%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군 숙소는 대부분이 부대인근 격·오지 지역에 위치하므로 지적하신대로 자녀교육 및 가족들의 문화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別居生活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금년부터 교통·자녀교육·각종 편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지역에 군숙소 단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陸軍計劃과 연계하여 2000년까지 노후숙소를 교체하고 부족한 숙소를 해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군숙소 문제의 핵심은 적정 豫算確保와 軍用地中 숙소건립 부지에 대한 行政規制를 완화하는데 있으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朴世煥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死亡事故 隱蔽疑惑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兵營管理의 미흡으로 귀중한 생명손실이 발생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에서는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구타사고가 수사상의 착오로 인하여 단순 自殺事故로 확인되는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조사 및 수사시 초기단계에서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世煥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災難에 對備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서는 아직 한 건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과거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부담없이 분명히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 병무청에 근무한 바 있는 허모 원사에 대해서는 수사한 사실이 없고, 병무비리 개입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 보직자는 이미 교체 완료한 바 있고, 앞으로는 순환보직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94년부터 97년도까지 依病轉役者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의료장비 CT, MRI 등의 발달로, 과거 진단이 확실하지 못했던 질환, 수핵탈출증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해졌고 96년에서 97년간, 군에서는 정병유지라는 목표 하에 고질병 환자 및 반복 입원환자에 대해서 전역조치를 많이 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陸軍參謀總長이 이러한 정책을 내세워서 그러한 골치 아픈 병역자를 의도적으로 재대를 시켰습니다. 또 방위병 현역화에 따라서 94년부터 97년간에는 신체조건이 떨어진 4급자원 약 2만3,000명을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점 등이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의가사 전역이 늘어난 주원인입니다. 그러나 의병전역과 관련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자체 감사기구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비리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은 엄중 처벌하겠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시정하겠습니다.

기무사요원의 依病轉役者 報勳特惠 疑感에 대해서는 身檢軍醫官의 자의적 판정에 의한 비리 배제를 위해서 身檢規則을 세분화하고 객관화 시키는 방향으로 이미 개정하고 있고, 정밀검사를 통해서 만일 범법자가 발견되면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국방부는 兵務非理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병무이행 전 단계에 걸쳐 발생 가능한 비리유형을 도출하여 國防改革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병무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병무청 상주 모병관제도 폐지하고 선병·모병·부대배치 직위를 2년 단위로 순환보직시켰고, 카투사 선발을 중앙선발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공정한 徵兵檢査 및 병역처분을 위한 판정관의관 및 징병관의 실명화 등의 운영체도를 개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兵役義務의 자진이행 풍토조성과 병역의무의 형

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선출직 및 고위 공직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徵兵檢査 專擔醫師制度를 도입하고, 신장·체중 등 신체조건에 의한 병역면제범위를 축소시키고, 의병전역 요건을 과거에 1심제에서 2심제로 보강하는 등 관련법 개정 후 99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制度改善과 함께 연루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처리함으로써 병무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張永達 委員님께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방북인원 증가에 대한 안전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특히 남북 해군간 '비무장 남북공동평화유지군' 구성 제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북인원의 신변안전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물론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군사적 차원에서의 조치를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북해군간 평화유지군 구성제안문제는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남북간에 합의한 공동해난구역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張永達 委員님, 徐濟源 委員님께서는 군내 구타사고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질의하셨고, 張永達 委員님은 모두대 방문을 제의하셨습니다.

軍에서는 사망 및 군무이탈 사고의 원인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여 93년 7월 구타 및 가혹행위근절지침을 국방부 훈령으로 제정, 하달하고 각급 부대에서 적극 노력한 결과, 구타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93년 이전에는 연평균 15명이었으나 93년 이후에는 연평균 4명으로 격감되었습니다. 그러나 6사단 사고처럼 구타에 의한 사망이, 자살로 조작된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의 구타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구타·가혹행위가 잔존하고 있어, 상습구타자를 색출하여, 신상필벌 조치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병사들의 스트레스 해소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병영시설 현대화는 불과 78%밖에 진척이 안되어 있고 대대 단위 종합체육관 건설을 위해서는 중기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소요가 800여 군데나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개인 체력



# 여성 · 장애우와 징병제

-군복무가산점제를 중심으로

정 강 자(한국여성민우회)

## 군복무가산점제 대응 활동

### □제대군인 가산점제란

제대군인의 취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채용 시험시 만점의 5%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제도.(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문제점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 군미필자의 공직진출을 제한함으로써 평등권, 공부담임권 침해.

### □대응활동

- 여성계 - 폐지요구('94~ )
- 행정쇄신위원회('94) - 가산점 비율 하향조정 방안 제출 - 관계부처반대로 보류
- 여성관계부처 정무제2장관실('94) 이후 여성특별위원회('98)-가산점비율 완화. 폐지요구
- 병무청('98) - '제대군인 지원법'시행령 개정.
  - 병역법개정 (군·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인정 호봉승급 의무화)
- 여성계('98) - 제대군인지원 법률안 중 군복무가산점제 위헌 소송청구.

### □위헌소송의 배경

-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 보상책 강화('98.5)
- 97년말 병역비리 사건이후 병무비리 척결,군가산점제 강화정책 등장-군필자 우대정책을 공공부문,민간부문으로 확산. 군필자에 채용,임금,승진의 3중 수혜 부여
- 여성고용조건 악화
- 경제위기이후 98년은 여성우선해고 등 성차별적 구조조종, 여성실업 급증



## 위헌판결 요지

□가산점제도가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인가, 단순히 입법 정책적 제도인가

-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39조2)”
-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가하고 있는 한 의무이행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불이익 처우란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 국가유공자, 상이군인,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우선 근로기회 부여.(헌법32조 6) 규정에 제대군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입법 편의상 가산제는 제대군인에 준용하였을 뿐 헌법상 근거가 될 수 없다.
- 가산제는 제대군인의 사회복지 지원 취지하의 입법 정책으로 도입된 것에 불과하다.

□평등권을 침해했는가

- 가산점제는 제대군인과 제대군인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제대군인이란?

- ① 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남자.(퇴역·면역 포함)
- ② 상근예비군 소집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된 남자.
- ③ 지원복무를 마치고 퇴역한 여자.

· 비제대군인이란?

- ① 군복무를 지원하지 않는 여자.
- ② 징병면제 처분을 받은 남자.
- ③ 보충역, 제2국민역에 편입된 남자.

우리 나라 남자 대부분은 제대군인 ①과 ②에 해당하며 전체 남자 인구의 80%가 이에 해당된다. (현역 입영 대상자 81.6~87%) 또한 우리 나라 여성 대부분은 비제대 군인①에 해당된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는 전체 남자 대부분에 대해 전체 여자 대부분을 차별 취급한 성별에 의한 차별로 보아야 한다.

- 군가산제는 신체건강한 남자와 병역 면제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 군가산제는 현역복무·상근 예비역자와/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실업기능요원)를 차별하는 제도이다.

□공무담임권을 침해 했는가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헌법 25조)”
- 능력과 적성에 따른 균등기회 보장 조항(능력주의 기회균등 정신)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성별,종교,사회적신분,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무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단,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 범위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연소자,여성

보호,국가유공자,상이군인,전몰군경유가족의 근로기회보장,여자,노인,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의무규정 등

## 장애우와 군가산점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장애인에게 군가산점제가 위헌인가

- 장애우 고용실태

15세이상 재가장애인	992,500명	
경제활동장애인	435,500명	
장애인 실업률	27.4%(20대초 47.6%)	
장애인 고용률	공무원	5.15%
	정부출연기관	1.275%
	정부투자기관	0.79%
	민간기업	0.46%
	30대재벌(338개사)	0.25%

2% 할당제 문제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이미 불평등구조에 놓여있는 집단의 불이익을 보상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잠정적 우대조치이다.따라서 이를 군가산점제와 등치시킬 수 없는 제도도입의 취지,기능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 군복무가산점제 폐지운동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

□관위헌결에 분노한 군필자들의 사이버테러

- 통신망,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남성집단의 여성에 대한 폭력
- 위헌소송운동의 주체였던 여성단체와 이화여대에 대한 조직적 사이버테러

□언론의 선정성 보도

- 군복무가산점제의 문제점,개선책,정책방향 등에 대한 객관적 보도태도 상실, 기득권층=남성과 사회적 약자=여성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도
- “감히 군대도 가지 않는-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군복무 수혜자인-여성들이 군제도를 건드리다니”“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가-여자로 군대가라” 등의 보도를 통해 여성에 대한 극렬한 혐오 표현
- 위헌판결이 능력위주와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고 있음을 외면한채,오히려 군필자들이 사회불만세력화 될 수 있으며 병역기피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는 신중하지 못한 판결이었다는 논조 유지-보도방향을 군필자 보상문제로 끌고 감

□폭력적,소모적 군제도·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 ‘징병제도를 반대하는 모임(징반모)’ 등의 출현
- 신성국방의무 뒤에 가려진 군복무로 인한 피해의식의 표출,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공론화 그러나 군복무가산점제 논란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군제도·군문화 개선의 움직임은 합리적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여성계가 제안한 군제도·문화개선 목소리는 현실성 없는 방어책으로 치부되고 있어 징병제, 폭력적 군대문화 개선 문제를 여성운동이 부각시키고 끌어 안고가기는 어려움
- 시민단체, 평화단체의 지지, 동참이 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군복무가산점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 초기 군가산제의 개선, 폐지 요구가 시작될 때부터 관련 부처간 정책조정 실패
- 위헌 판결후 군복무가산점제를 국가봉사경력이산점제로 대치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반대에 부딪혀 실현시키지 못함
- 반대이유-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를 그대로 안고 있는 반헌법적 조치  
    봉사의 진정한 목적 침해  
    현실적용의 문제점

*군복무가산점제*

군복무가산점제 폐지운동이 남긴 숙제들

(*3400 + 2000 + 5000*)

군가산점제 폐지운동은 노동시장 진입상의 기회균등 요구였다.

기회균등 요구는 곧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군축, 평화통일 문제와 마주보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의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

- 병역제도의 공론화
- 징병제하의 군복무자에게 보상을 해야하나?  
· 어떤 보상을, 누가
- 병역제도의 주요 정책변수인 병역자원, 병역규모, 복무기간의 개선에 여성운동이 개입해야하나?  
· 지원병 위주의 정모혼합제, 완전지원제로 전환가능 한가(한 가구인구증가 1.42인, 2003년 이후 병역인구 하락 예상) *2004년 이후 2년*
- 남북관계 개선 정도가 주요변수인 병력규모 문제
- 잉여병력의 대체복무 축소와 노동시장과의 관계
- 현행 병역제도에 복무기간 축소문제

(*127722 10 ~ 127722 2 340000 2년*)

*<붙임 1>*

# 師團長 被告訴事件 調査結果

## ■ 개요

여군 중위가 사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

## ■ 인적사항

### ▲ 고소인

- 중위 ○○○

### ▲ 피고소인

- 소장 ○○○ (前 ○사단장)

## ■ 사건경과

- '00. 12. 29. 성추행 혐의로 ○사단장 고소(○군단 검찰부)
- 12. 30. 고소취하
- '01. 1. 3. 육군 고등검찰부, 사실관계 조사  
  ~ 1. 6. 조사관 : 고등검찰부 외 검찰관 3명  
          · 조사중점 : 고소사실의 眞正性, 고소취하의 自意性  
          · 조사대상 : 고소인, 피고소인 및 관련 참고인
- 1. 8. 조사결과 발표

## ■ 조사내용

### ▲ 고소사실

- '99년 12월 회식장소에서 고소인의 등부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피고소인의 공관에서 고소인을 껴안고 입맞춤



- '00년 1월부터 3월 사이 피고소인의 집무실에서 3회에 걸쳐 고소인을 껴안고 입맞춤
- '00년 4월부터 6월 사이 피고소인의 집무실에서 5회에 걸쳐 고소인을 껴안음

#### ▲ 조사결과

- 피고소인은 부대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급간부에 대한 관심과 격려의 의미로서 등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을 뿐이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 조사결과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

### ■ 조치사항

#### ▲ 사단장 처리

- 형사처리 여부  
위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이 이미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
- 징계 등 조치
  - '00. 1. 8. 부로 보직해임
  - 육군중앙징계위원회 회부

#### ▲ 군내 성추행 근절대책

성적군기문란사고 방지지침, 성희롱 방지지침 등을 강력히 시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군내 성적군기확립을 위한 노력 경주



## 사단장 성추행 사건 징계관련 사항

### ■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직책	계급	성명
위원장	육군 참모차장	중장	선영제
위원	육본 군수참모부장	소장	김기성
위원	육본 치위통신참모부장	소장	차원양
위원	교육사 전력개발부장	소장	윤천득
위원	육군대학 총장	소장	박홍근

### ■ 중앙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3월(본봉 1/3 감액)

### ■ 최종 징계결과

정직 3월(본봉 1/3 감액)

작성자 : 육본 법무감실 수석검찰관 소령(전) 김홍석 (960-1541)



### 최근 3년간 성범죄 현황 ;

단위:명

구 분	'98	'99	'00
성 폭 범 위 반	40	43	28
강 간	92	96	74
강 제 주 행	26	36	23
추 행	39	56	66
기 타	2	0	2
계	199	231	193

※ 동성간의 성범죄는 균형범상 추행죄로 의율되고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에 대한 재해석 / 지방부 논의 ;

2. 공무원에서 시민에 대한 역할 / 운동 (지방자치시엔 어떤 것들이 있었나?) ;

3. 재해석의식 : 강-다원 →

⊗ 지방자치운동 - WCC / IFAOR

i) 다원적이라 해서 여러 부서.

ii) Frontier GO Report / NGO shadow Report.

iii) 특별보조금 제도

o "병사하루하루" = 민중에서 지방자치/부 운동 지원 수반

⊗

(한양대 / 연세대 / KNCC / 다산 / 지방포럼 / 신촌포럼 / 신촌대 /

- 연세 : 연세 / 연세 / 연세 (노원/ 연세)

教育体系 分散!  
flexible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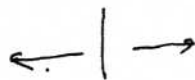
\* 연세대 (95-6) = 병사하루하루

\* URM

i) 문제보석 - 사관학교

ii) 학생양 : 고려대 연세

iii) 학생들.



⇒ 정교제 (校園問題!)

\* 양신수 정제



#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 나도 군대에 보내달라!

최정민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인터뷰하러 가던 그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곳은 날씨였다. 조금 늦게 도착한 나는 약속장소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로비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김형수씨(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 한신대 대학원)를 찾을 수가 없었다.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형수씨를 연결해 주었던 다른 사람을 불러낸 후에야 로비에 다른 사람들과 앉아 있는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목발을 짚지 않고 휠체어를 타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앉아 있는 그를 나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장애인이란 이유로 모르는 사이지만 쉬 만나지리라 생각했던 나의 예상은 첫 대면에서부터 빛나가버렸다.

얘기를 나누기 위해 학생회관 내 카페로 자리를 옮기면서 김형수씨는 자신보다 빠른 내 발걸음을 생각해서 거의 뛰다시피 옆에서 같이 걸어주었다. 그 날 연세대 학생회관 3층에서는 '전국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 총회가 있는 날 이어서 그런지 학생회관엔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소속 회원인 듯한 휠체어에 탄 장애인을 비장애인 남성 4명이서 힘겹게 들어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계단의 높이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계다. 얼마 전 TV에서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한 가수가 계단이 가장 무섭다는 말을 했던 것이 떠올랐다. 난 많은 부채감에 휩싸였다.

## 1. 안정적 사회진출에서 군가산점제도라는 높은 벽

정강용 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공채 시험에 응시해서 82.22점이라는 점수를 받았다. 이 점수는 당시 가산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응시자 가운데 차석을 차지한 높은 점수였다. 하지만 결과는 차석의 높은 점수를 받은 그는 탈락하고, 실제 시험 점수 78.33을 받은 군필자가 그를 밀어내고 가산점 5%를 더해 83.33점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시험에 응시한 동기생 한 명 역시 81점을 받고도, 가산점 5%를 더해 86점으로 전체 순위 5등의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이후 군가산점을 만회하기 위해 하루 13시간씩 공부하는 강행군을 한 그는 다음해인 92년과 93년에 다시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결과는 가산점으로 인한 불합격이었다. 93년의 경우 충청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그는 점수로로는 합격자 45명중 28등이었지만 가산점이 적용되자 133등으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 김도현, 군가산제 비대위 '낮은시선' 자료집 中

장애인들이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진출의 폭이 좁은 장애인들에게 공무원 시험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공간인 것이다. 특히나 요즘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취직을 희망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하지만 위의 정강용씨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군가산점제는 열심히 공부해서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벽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이나 선배들이 취업을 할 때 공무원을 많이 생각을 해요. 공무원은 장애인에 대한 할당제도가 있고 또 상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머리에 먹물 들어간 장애인이라고 하면 다 공무원을 한 번



씩 고민을 해보는데 대번 걸리는 게 그 군가산점제도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9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5점이거든요. 45점을 플러스 해준 거니까 100점을 맞지도 못 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95점을 맞지도 플러스 45점 해버리니까 140점이 되 버리죠.”

하지만 어렵게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주위의 따가운 시선은 만만치 않았다. 특히 장애인들은 따라 할당제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고민은 여성들은 군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논리가 강한 건 사실인데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획득할 수 있는 논리가 상당히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에 대한 할당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완제도가 있는데 왜 헌법소원을 하느냐라는 것에서 문제의식은 그거였어요. 헌법소원이 누구한테 당사자한테 문제가 있다 없다 간에 그 당사자가 군가산점제로 이익을 보던 안 보던 간에 군가산점제도 자체가 보수적이고 차별적이라면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개선되어야 하는 법이고 바뀌어야 할 법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리다툼으로 군가산점제도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서, 차별의 문제로서, 인권의 문제로서 접근을 해야 되고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고민되었던 부분이었고..”

실제로 할당제 등의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 기관에서조차 이러한 할당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2.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 그 후

별다른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정말 뜻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성과 신체에 장애가 있는 남자 등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했던 당사자들도 그리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그 이후 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했던 사이버 성폭력과 위헌 소송 제기 당사자들에 대한 위협이 한동안 자행되었다. 실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여성들은 갖은 욕설로 씌어진 메일과 위협전화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것은 실제로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확대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폭력이었고 그 일로 인한 상처는 지금까지도 그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사이버 상의 성폭력도 주로 여성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자행되었던 것처럼, 예상과는 다르게 장애인들에게는 별다른 협박이나 위협은 없었다.

“전화가 왔어요. 형수야 빨리 경호원 붙여라. 실지로 여성들은 그 정도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다들 저를 여자인 줄 알았대요. 다들 여자인줄 알고 나중에 토론회에서 장애인인줄 알았대요.”

“여성이 장애인보다 더 만만한 거 같아요.”

군가산점제도 위헌 소송이후 진행되었던 토론회나 논쟁들은 그다지 건설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이버 상에서는 너무나 쓰레기 같은 욕설과 논쟁을 가로막는 남성들의 집단행동으로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그 속에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를 확장해 보려는 시도들은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병역의 의무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부과되어 힘들게 군생활을 마친 군필자들과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고 싶었다. 군가산점제도가 실질적인 보상이 아님을 보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실밖에 하지 못함을 그리고 새롭게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싸워나가자는 제안은



이제 조금의 시간이 흐른 지금이야 조심스럽게 꺼냈다.

“실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나서 판정이 되고 나서 상당한 반대 여론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반응을 안보였던 것도 그것은 일종의 화산폭발이 있는 후에 화산재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걸 놔두면 사라질 거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가산점제 하면서 군대간 친구들, 남자들 많이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군가산점이 여성들하고 장애인들에게 차별적이고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걸 감성으로 바꾸면 그래도 싫다. 자기가 공무원시험을 안 봐도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헌법소원을 하면서 설득해야 되고 획득해야 될 이론들은 설득되어야 될 것들은 정부도 아니고 이런 이성과 감성에서 오는 남성들의 피해의식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엄마가 아들을 군대보내면 이 엄마는 아들 편이요. 누나도 아들 편이죠. 그리고 장애인 아버지도 자신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 비장애인이면 군가산점제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잘 못하죠.”

“군사제도라는 것이 우리 나라 20대 청년들이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빠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어떻게 한 귀퉁이를 무너뜨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런 고민이 되었어요.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죠. 여성단체들이 장애인들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한 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조용했던 것도 그렇잖아요. 막 열 받은 실연 당한 여자한테 너 울지마, 울지마.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일단은 사회가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다 표출하고 난 뒤에는 아까 제가 감성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감성이 다 표출된 뒤에는 남는 건 이성밖에 없으니까 그 때부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감성이 많이 죽었거든요. 좀 논리적인 논쟁, 토론할 시기가 왔다. 딱 보고 있어요. 언제 내가 발언을 해야 하나. 군가산점 문제는 많이 바뀌었고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여전히 많은 20대 남성들을 정치적으로 휘둘러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실제적으론.”

“장애인 할당제는 할당제고 군가산점제는 누군가가 이유도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건데. 모든 사람이 국가 공무원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또 국가에서 일정정도 책임 있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상조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삼중적으로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세미나 하면서도 매일 그거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고민하지 말자. 공무원시험 본다는 비장애인들을 모아서 거기서 티오펀 주면 안되느냐. 모든 남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확대하지 말고, 아니면 군대에서 국가공무원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 다든지. 얼마든지 제도보완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건 또 수공을 해요. 문제는 감정이예요. 감정. 이게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국가가 군대 갔다온 사람들을 보상해 준다는 하나의 상징에 대한 상징적인 치료제거든요. 자기가 공무원시험을 안 봐도 그런 부분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거지.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도 문제 될 것이 없죠. 차라리 그렇게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 모아서 정부하고 싸워야 되죠.”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군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들도 금기시 되어왔다. 남북의 분단과 끊임없는 적대적 감정의 재생산으로 국가안보는 우리 민족의 존립을 위해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였고 이것을 위해 국방력의 증강은 높은 국방비와 전 국민적인 병영화로 대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제기일 수 있었기에 금기시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의 화해무드와 IMF 이후 경제적 불안은 이러한 높은 성역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국방력의 증강이 문제가 되었으며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군사비를 줄여 사회복지비로 환원하라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이러한 목소리 중에는 당연히 군대 자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것은 군가산점제도 헌법소원 판결 이후 불거졌는데 너무나 말초적인 본전생각의 남성들이 그져 여성도 군대가라는 감정적 대응으로 치달으며 현재 별다른 논의의 진전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당연히 군가산점제도는 군대가서 뺨이친 남성들을 위한 실질적 보장제도가 아니다. 하지만 실제 현재의 판결 이후 군필자 남성들이 보인 말초적 반응을 보면 군대라는 문제가 단순히 제도나 보상의 문제만으로 논의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개별 남성들이 군인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군대의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가부장적인 군대문화의 문제나 군대내의 복지의 문제, 정치,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로 언급되어왔다. 그런데 군가산점 위헌판결 이후에 이러한 군필자 남성들이 보인 반응에서 군과 관련된 논의들은 거시적인 차원이나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서 개인이 직접 체험한 군대경험으로 환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군대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입을 다물어라' 혹은 '우리가 얼마나 뺨이쳤는지 아느냐' 등의 눈물로 호소하는 류의 글이 통신 공간을 도배하고 있는 것에서 군대의 경험의 유무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험이었느냐 현역이나 방위나 해병대나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 사이에서 차이와 위계를 만들어낸다. '군대를 다녀와야만 사람된다'와 '군대를 다녀오면 바보 된다'는 두 가지 언설들을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써먹으며 이렇게 군대경험은 다시 가라면 죽기보다 싫지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가치있는 일로 구성되며 남성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 3. 비단 군가산점제도 뿐만이 아니다

군대를 가지 못해서 겪는 폭력들은 이렇게 제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별다른 맥이 없는 대한민국의 청년이면 모두 군대를 가야하기 때문에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의례 군대 시절의 경험은 빠지지 않는 얘깃거리가 된다. 그것은 군대 시기뿐만이 아니라 입대 이전, 입대 이후로 이어지며 군대를 경험하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힘들었던 절절한 얘기를 들으며 일종의 부채감같은 것이 형성되며 그것에 따른 피해의식과 박탈감, 소외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 나라 사회에서 남자가 군대 안 간다. 인간취급 못 받아요. 사회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그런 전체 군사적인 문화에서 소외되는 것이 강한 거고 실제 농담 삼아 우리 행정병 시켜 줘.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거든요.”

“대학 내에서도 군대가고 하면 환송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친한 친구일수록 감정이 나오는데. 너는 군대안 가서 좋겠다라는 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 때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거는 감정적인 문제고 어떻게 문제제기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뭐 이제 제대했다고 하더라도 전부다 군대 얘기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끼어 들지도 못하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뭔가 힘든 일을 시킬 때 그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다고 얘길 하겠죠. 군대는 사회적으로 통과외례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기제만 된다면 다들 군대가고 싶어해요.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하나까요?”

막상 군대에 입대할 시기가 되면 군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조차도 '너는 좋겠다. 군대 안가도 되서...'라는 말을 하며 군대 입대 자체를 굉장히 자신의 삶에 있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군대를 다녀와서 그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군대경험은 대부분 반인권적이고 억압적인 기억들보다는 TV의 모프로그렘에서 함께 군생활을 했던 전우들이 나와서 그 시절의 기억을 따뜻하고 재미있었던 경험으로 구성하는 것처럼 재미있다. 힘들고 고달팠던 기억들조차도 '억압적이었다'가 아니라 '잘 견뎠다'이다.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인 통과외례를 치르고 그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군대 혹은 군대제도 자체의 문제로 얘기되지 못하고 모두 개인이 감수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 4. 차라리 군대에 보내달라

쓰레기 같았던 사이버 공간에서 억울하면 여성들도 군대가라는 제안(?)은 비아냥거림처럼 들렸다. 하지만 군대에



갈 수 없어서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징병제가 없어지고 새로운 대안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떨치기 힘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들은 차라리 군대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비록 부자유스러운 몸이지만 행정처리 같은 일은 너끈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징병제를 폐지하는 것이 힘들다면 누구는 군대가고 누구는 가지 않아서 차별 받을 것이 아니라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되 각기 처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국방의 의무로 대신하는 것이다.

“징병제도 어쩔 수 없다면 모든 국민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다양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뭐 장애인들에게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딸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투입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는 장애인 개개인들의 문화적인 발언, 군사문화에 대한 발언들, 장애인도 군대가자. 군대에게 해줘. 편의시설 해주고 경사도 깔아주고. 해주면 우리 같게. 그런 거거든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어필 할 수 있는 기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조면 간다. 여성들도 그래. 여성들은 충분히 임신에 대한 능력을 보호받으면서 여성성을 보호받으면서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으면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회가 사실 할 말이 없죠. 사실.”

“어차피 모든 국민들에게 징병제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물론 징병제 자체를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처럼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충분히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꼭 그렇잖아요. 전방부대를 책임진다고 해서 군사가 이기는 게 아닌 것처럼 여자도 공익근무요원처럼 교사가 많이 딸린다든지 보육사가 많이 딸린다든지 하면 그런데 투입이 되면 되는 거고 장애인들도 실지로 장애인들이 총칼은 못 들지만 컴퓨터도 다룰 수 있고 다 하거든요. 다 하잖아요. 전략연구소도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직능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지. 지금 우리 나라의 군사문화는 그런 거는 아닌 거거든요. 오로지 20대의 건장한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군사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열려있지 않고 군대자체도 분명히 차별적인 거예요. 사실.”

## 5.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은 사람이다

물론 전술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이렇게 징병제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꺼내놓는 건 현재 장애인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항상 장애인들은 사회에 이익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거두어야 하는 보살핌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은 별로 반갑지 않은 것이다. 보살핌의 대상으로써 모두가 군대에 가야만 하는 짐을 그냥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회에서 당당한 한 몫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보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의 창출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소득의 소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의 대상이지 창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장애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어떤 업무에 봉사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합의를 이룬다면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능력껏 우리 사회에서 봉사를 하는구나. 봉사를 하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거지. 지금 뭐 장애인과 더불어 삽시다. 이런 어떤 수세적인 관점은 스스로 없어지는 거죠. 수세적인 관점이 없어져야... 사실 전략적인 연구나 지형적인 연구 이런 거는 장애인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권력이 이양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장애인들은) 사회에 자기를 많이 끼워 맞추는 스타일이 강하지 그것들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없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경험들, 자기 존중감을 많이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항상 사회에 부담되는 존재,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수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실제로 제가 군가산점을 장애



인이 공식적으로 걸었던 이유도 나를 한 번 보고 모델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게르니카(연세대 장애인 동아리)도 장애인 주도적으로 오버를 했던 것도 사람들이 이게 권린지 이게 자기의 것들인지를 잘 인식을 못하거든요. 학교 들어왔어도 학교 그냥 받아줘도 고마워해요. 학교는 고마운 존재예요. 장애인들한테 있어서. 고마운 존재가 아니다 나는. 교육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아무리 말해도 고마운 존재예요. 고맙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전까지. 그거를 보여주는 작업을 참 많이 했었죠. 그것이 말로써 쉽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특히 장애인들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강하죠. 그래서 저희 동아리나 장애인 쪽에서 이런 명제가 있어요. 비장애인 10명을 설득하는 것보다 장애인 1명을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정도의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군가산점 소송도 피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요즘 사회에 누가 군가산점 했다고 물론 갈구긴 하겠죠.”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사회의 시각은 장애인들이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실을 해왔다. 보살피주는 입장이고 보살핌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지 못한 것이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은 이렇게 주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 6. 자신의 얘기들

그렇게 주체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형수씨는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이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교육과 집안 내의 문화적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한다. 항상 도움 받아야 하고 보살피 줘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똑같은 인간으로써 조금 불편한 신체를 타고 난 똑같은 인간으로써 부모님은 그를 키웠다. 학교 교육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받았다. 이렇게 자란 그에게 소수자인 장애인들이 살기엔 너무나 열악한 사회복지 시설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임에도 훨씬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만 하는 억울한 일로, 차별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로 다가왔을 것이다.

“저 자체가 운동천데. 운동의 결판데... 저는 이쪽 장애인이나 이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싫었어요. 왜냐면 아니까 문제가 뭔지도 알고 해결책이 뭔지도 알고 어떻게 움직이면 해결되는지 다 아니까. 20몇 년 동안 장애를 갖고 살면서 부모님들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헤쳐왔기 때문에 알죠. 뭐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 쪽 쳐다보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쳐다보려고...”

“우리 부모님이 더욱 더 운동하시는 분들이예요. 우리 집안 자체가 각자 책임지자 예요. 완전한 자유방임. 그게 더 무서워요. 아들이 데모하면 이유가 있겠거니 잡혀가면 잡혀갔겠거니. 설명하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머니도 뭐 저 키우면서 투쟁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학생운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머리를 잘 굴려서 오버하지만 마라. 잡혀갈 때 잡혀가고 전경이 때릴 때 때리지 부화뇌동하지 마라. 이런 게 저희 어머니의 그거지 뭐 오히려 적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빠르시니까. 이해가 빠르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판단을 잘 하시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니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니가 그만큼 선배들한테 받았으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때가 온 거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몸 상하고 이런 걸 안타까워하시지만 개념적으로는 더 독려하시는 편이예요. 우리 한국의 장애인의 특성이 뭐냐하면 자기 개인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뛰어돌지를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이 뇌성마비면 뇌성마비 재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 사회 참여적인 게 많은데 한국의 부모들은 일단 자기 자식만 먼저 재할이 되고 가능해지면 입을 닦아 버린다는 거죠. 그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교육의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집안 자체의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장애인 김형수가 김형수고 둘째 아들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장애인 김형수가 김형수예요. 보통의 엄마들이나 부모들은 쉽사리 인정하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꿈은 변치 않거든요. 내가 장애를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어머니도 같죠. 같은데 개념이 다르죠. 장애는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지 뭐 비장애인에 가깝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성들이 여성해방을 하려면 남성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사장도 하고 이런 거하고 지금의 일반 장애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나 의식구조는 똑같은 거거든요. 장애인들이 대학교 와서 제일 많이 빠지는 오류가 그거예요. 장애인들이 대학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자아실현이나 학문적 욕구가 강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신분상승이라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대학이라는 거 자체 그리고 석사, 박사, 교수라는 거 자체 그리고 학점이라는 거 자체가 나의 모든 결점과 약점과 모든 것들을 커버해 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거죠.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저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릴 때부터 그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해수욕장 데리고 가면 해수욕장 잘 안 데리고 가잖아요. 니 맘대로 놀아라. 목발 짚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쪽 교육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날 안 부끄러워하니까 나도 나를 안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병제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을 혹은 집단을 만났다.

실지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우리의 운동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함에서 무척 괴롭고 아팠다. 또 한 정병제의 문제가 단순히 제도나 보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군사주의 전반의 문제라고 할 때 그의 표현대로 어디서부터 구멍을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이며 계속 이어질 고민일 것이다. 나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아직까지 군사안보와 국방력 증강이라는 성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철벽같은 성이라도, 그것은 꼭 존재해야만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되더라도 그것에 의해 고통받고 차별 받는 현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점진한 목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화해무드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군사력 중심의 안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목소리들도 높아져 가고 있다. 군가산점제도 소송을 계기로 군대 문제에서 항상 타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과 장애인 등 미필자들도 자신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구멍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



# 대한민국 징병제의 또 하나의 폭력 병역특례제도 관련 초벌 보고서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alterite@jinbo.net)

## □ 병역특례제도 개요

○ 병역특례제도로 알려진 대체복무제도의 본래 명칭은 전문연구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의 목적에 대해 병무청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지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전문연구요원은 석·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기술자격(면허)기준에 따라 제조·생산분야에 종사토록 하여 국가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병무청

○ 그 동안 병역특례대상분야는 방위산업, 전문연구활동, 공중보건 등 극히 제한된 범위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91년 병역법개정과 함께, 공업, 에너지, 광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됨. 당시 정부가 내건 취지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3D업종 산업체가 겪는 인력난을 징집대상인력 중 잉여인력을 투여해 해소한다는 것이었음.

○ 현역대상자의 경우 학력별로 요구되는 특정한 기술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편입대상으로서 매해 병력수급상황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며(현역병 징집 후 남은 잉여인력 만큼 편입) 3년 간 복무하게됨/보충역소집대상자의 경우 특별한 기술자격증 없이 지정업체에 취직하면 편입되는 것으로 인정되며(제조 및 생산분야, 건설공사 현장분야, 선박승선분야 등) 인원제한이 없고 28개월간 복무하게됨.

## □ 병역특례와 관련된 문제점.

○ 산업기능요원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인격, 노동권 침해

- 병역특례제도가 지정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면 특례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다시 군대에 입대해야 함 (지정업체에서의 3개월 근무를 현역 및 보충역 1개월로 환산한다고 함. 예컨대, 2년간 특례 지정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되면 거의 2년간 다시 군 생활을 해야함.

- 이 같은 제도로 악용해 사측은 해고라는 암묵적 위협을 바탕으로 낮은 임금과 과다 노동, 인격적 심리적 침해를 강제할 수 있으며, ‘해고=군대’라는 인식이 강한 병역특례 노동자들 또한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인터뷰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음.

“금속산업분야 특례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산업연수라는 이름으로 보통 1년 동안 대기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킨다. 결국 4년 동안 복무하는 셈이다.”



“특례기간동안 판짓(회사 눈에 벗어나는 일)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

“벤처업체들은 야근, 철야가 일상적인데, 월급은 쥐꼬리만하다. (월급 작다고 불평하면) 군대안가고 여기서 이렇게 호강하는 것 만해도 그게 어딘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일 이딴 식으로 하면 당장에 군대 보내버린다고 호통...”

### ○ 노동조합 활동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

-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는 징집 대상자들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서의 병역특례 대상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

- 최근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멀티데이터시스템 노조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멀티데이터시스템 노동조합은 벤처업계 최초의 노동조합으로 2000년 2월 9일 조합을 설립했음. 2000년 5월경 쟁의를 통해 임금문제와 불법 파견업무<sup>2)</sup>에 대해 문제제기 해 단체교섭이 타결됨. 그러나 11월 28일 조합 간부 4명이 군사훈련(병특노동자들에게도 복무 중 일정기간동안 군사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음)을 받는 동안 병역특례선정 취소 신청을 하여 11월 28일자로 병역특례업체 취소 허가 처분을 받게됨. 회사의 취소신청 이유는 경영악화와 사업전환이었으나 2000년 상반기 재무재표와 상업등기를 확인해보면 멀티데이터시스템은 매출과 수익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정보통신업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라는 지정사업성격 또한 바뀐 것은 없었음. 노동조합DMS 사측의 병특취소신청을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원직 복직 투쟁을 진행중임.

### ○ 지정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서의 비리가능성

- 지정업체는 회사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선정될 수 있으나, 병역특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지정업체 선정은 병무청 마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병무청의 고유권한이 매우 강력함.

- 지정업체가 되면, 중소기업들의 경우 극심한 인력난 해소 및 세무상의 이득이 있으므로 많은 회사들이 지정업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정보기술(IT)계통의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인력확보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해마다 병무청에 지정업체 선정을 무더기로 요청한다고 함.

→ 결국 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비해 실제로 지정업체로 선정되는 기업들은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정업체 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뒷거래”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음

- 병역특례제도를 악용해 필요인력을 충원하고 있기도 함. : 인터뷰를 통해 들은 사례를 소개하면,

“대기업은 근본적으로 지정업체가 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A라는 대기업이 병역특례제도를 이용해 지정업체로 선정된 B라는 중소기업과 모종의 거래를 맺어 B업체가 병역특례자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그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평상시에는 A회사에서 일하다가 병무청 조사가 나오면 그 때에만 B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미고 ...”

“지정업체로 선정된 산업분야와 무관하게 돈 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원래 파견업무는 불법인데, 말 안 들으면 당장 군대이라고 협박하니 어쩔 수 없이 한다 ... 나중에 병무청에서 적발되면 우리들만 손해본다. 파견업무를 강요한 기업은 벌칙금 얼마에 지정업체 선정 취소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다시 군대에 끌려가야

2) “병역특례직원이 파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체가 병역특례업체여야 하면, 파견시 이를 병무청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파견이 이루어졌을 경우 병무청에 의하여 발각이 되면 병역특례 노동자에게 그동안 얼마의 시간을 병역특례로 일했느냐에 상관없이 바로 입대를 하여 처음부터 다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엔 불법 파견을 나갔다는 이유로 병역특례 복무기간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입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노조는 직원보호와 법적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법 파견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파견을 철회시켰습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라도 있으면 미움을 받더라도 그나마 불법 파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없는 수많은 회사들에서 힘없는 병역특례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파견을 나갈 수 밖에 없으며, 직장을 옮겨야 하는 부담감과 자기 외의 병역특례직원들에게 피해줄 것이 두려워 쉽게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다. 3년 동안 병역특례복무를 마친 사람 중에는 나중에 불법 파견업무가 발각돼 다시 군에 입대한 경우도 있다.“

○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장치 부재

- 병역특례자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그러나 소송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되는데, 실제 복직 관련 심의가 진행된다면, 지역 노동위원회에서 3-4개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5-6개월, 즉 대략 1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함. 물론 1년여의 기간동안 징집은 당하지 않으나, 많은 병역특례자들이 해당 1년간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신분상으로도 불안한 기간이 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것이 사실임. 또한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야 그나마 다행이지만 패소할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 이후 구체적인 조사를 위한 초벌보고서임. 인터뷰에는 멀티데이터시스템 노동조합, 병역특례로 대체복무를 진행한 시민 1인이 응해주었음. 참고자료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병무청(2001.02), 「병역특례 근로자 "차라리 군대가겠다"」 「시사저널 (95.5.4)임

○ 대체근로

- i) (추천) : 병역 / 대체근로
- ii) 2 " : 고용노동

지문: 근로 (병역도 / 대체근로도? (호병상 병역의무지급 어느때까지?).